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신한카드㈜ 베트남 현지법인(Shinhan Vietnam Finance Company)

2. 제재조치일 : 2025. 4.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영업자금 조달의 다변화 방안 검토 강화

베트남 현지법인은 베트남 진출 후 2024년 6월말까지 영업자금 조달원천의 OO% 이상을 현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단기자금으로 조달하고 있어

자산부채 운용 과정에서 만기불일치 위험이 있고, 시장 변동성 확대시 차환실패 및 조달여건 악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조치할 사항>

베트남 현지법인은 앞으로 현지 자금조달 여건 및 향후 영업자금 조달 다변화 방안을 본사와 충분히 논의하여 본사에서도 이사회 차원에서 현지법인의 자금조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2) 고객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강화

베트남 현지법인 내규에 따르면 베트남 현지법인은 채권추심 관련 업무를 위탁한 채권추심회사와 계약관계 종료시 채권추심회사 소속 직원들의 현지법인 고객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계정을 즉시 삭제하는 등 차단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나, 이를 적시에 조치하지 않아 권한이 활성화된 사례가 있었고,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사용자 권한을 보유한 현지법인 직원이 퇴사하거나 타부서로 이동한 경우 즉시 관련 계정을 삭제하고 거래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적시에 조치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는 등

관리 부주의로 인해 계약관계가 종료된 채권추심회사 직원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 위험 또는 퇴사 직원에 의한 자금유용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방지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채권추심・인사・자금・대출집행・전산 담당 유관부서는 위・수탁회사와의 계약종료 또는 직원의 퇴사・부서 이동시 각종 거래를 위한 접근권한이 즉시 차단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화하여 관리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사후점검을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감사팀은 정기적으로 사용자 권한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법인장 및 위원회 등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등 사고발생 위험 방지 활동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3) 대손상각 책임심의 실효성 강화

본사 내규 등에 따르면 해외법인의 감사부서 또는 내부감시인(Internal Auditor)은 해외법인 자체 여신업무 관련 기준에 따라 대손상각 대상채권에 대해 자체적으로 대손상각 책임심의(이하 '상각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지법인 감사팀은 매월 대손상각 대상채권 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해 상각심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대출취급 및 채권회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베트남 현지법인 감사팀이 상각심의 대상채권 중 실제 샘플을 통해 점검한 건수가 매우 미미하고 동 샘플 선정과 관련된 별도 기준이 없어 高리스크 채권에 대한 점검을 누락하는 등 점검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수립 및 이행여부 검토 등 사후관리 절차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베트남 현지법인은 앞으로 상각심의 대상채권 점검을 위한 샘플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유의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현업부서로부터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실제 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손상각 책임심의의 실효성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현지법인 중요사항 관련 보고 체계 및 운영 미흡

본사의 해외법인 관련 지침에 따라 현지법인은 경영관리, 리스크 관리 등 중요사항을 본사에 보고 또는 승인 받는 절차를 수행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업무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① 현지법인 보고체계 강화

현지법인이 보고하여야 할 사항들이 개별 부서 단위로 보고되고 있으며 적시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항목이 누락될 위험이 있다.

본사 내규에 따라 해외법인 준법감시부서장 임명·변경시 본사 준법감시인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 '23.11월 선임한 준법감시인의 임명에 대해 본사 준법감시인의 보고 및 사전승인 요청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본사는 앞으로 베트남 현지법인의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통합 보고 플랫폼을 구축하고, 본사와 베트남 현지법인은 3단계 모니터링(예 : 현지법인, 본사 글로벌사업팀·준법감시팀)을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② 현지법인 보고업무 내실화

베트남 현지법인의 본사 보고내용이 제목 위주로 간략하게 기재(영어)되고 일부는 법인장에게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베트남 금융당국의 현지법인 검사결과가 본사에 간략하게 영어 요약 형태로만 보고되고, 본사도 언어 문제 등으로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금융감독원에는 한글로 제목만 보고하고 있어 베트남 금융당국의 검사결과에 대한 구체적 내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조치할 사항>

베트남 현지법인은 앞으로 본사 앞 보고내용을 충실히 기재하고, 법인장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직무전결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고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기 바랍니다.

(2) 신용평가모형 검증 미흡

본사 내규에 따르면 분기마다 자체 신용평가모형의 성능 및 안전성을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베트남 현지법인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소액 소매대출을 주력하는 파이낸스사로서 변별력 있는 신용평가모형을 기반으로 대출한도 및 금리를 결정하고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대출자산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관리하여야 한다.

베트남 현지법인은 2019년 베트남 최초 진출시 사용한 신용평가모형을 2021년 한 차례만 업데이트했을 뿐 유의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장기간 모형의 변별력이 저하된 상태로, 이로 인해 대출자산의 건전성이 악화되었음에도 신용평가모형을 개선하지 않고 대출 취급기준(Cut-off)만을 강화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베트남 현지법인은 앞으로 신용평가모형을 재개발하고 정기적으로 유의성을 검증하여 법인장 등에게 보고하는 한편, 신용평가모형의 변별력 유지를 위해 본사 리스크관리 부서, 모형검증팀 등 유관부서와의 협업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3) 금융사고 관련 보고 절차 및 명령휴가제도 운영 미흡

① 금융사고 관련 보고 절차 미흡

본사 내규에 따르면 해외법인장은 금융사고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지체없이 본사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베트남 현지법인 내규에는 '금융사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지침도 없어 소송 이외의 사고 보고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베트남 현지법인은 금융사고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여 전사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표준화된 사고보고 및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등 준법감시팀을 통해 전사적 금융사고에 대한 통합 관리 및 충실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사고 관련 내부통제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② 명령휴가제도 운영 미흡

베트남 현지법인 내규에서 고위험 직무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명령휴가제도*는 사실상 마련하지 않고 있다.

* 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명령휴가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휴가기간 중 별도의 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조치할 사항>

베트남 현지법인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 제도를 보완하여 고위험 직무 임직원을 대상으로 명령휴가를 실시한 후 직무내용을 점검하여 이를 보고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